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587,511	8,177,625
일반회계		228,979,541	6,869,386
특별회계		43,607,970	1,308,239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7,343,692	820,3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21,679	441,6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22,013	378,660
	기타특별회계	16,264,278	487,9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43,578	40,307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90,000	2,7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22,000	24,660
	공업단지특별회계	33,200	99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8,790	9,8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2,000	3,06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4,614,000	138,420
	기반시설특별회계	43,710	1,3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887,000	266,61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0,17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